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교육법적 쟁점

박 창 언

최 호 성

서 혜 애

부산대학교

경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주제어: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 영재의 선발, 교육과정, 영재 담당 교원

I. 서 론

영재아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의 특수한 문제로 한정지을 수도 있으며, 전 국민적이고 인권의 문제에 속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대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교신저자: 박창언(cupark@pusan.ac.kr)

존중하고, 이를 위해 각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체제가 진행되고 있다. 영재아동도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성에 따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발달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도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재교육과 영재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논의는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교육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사상은 공적인 교육체제 내에서 논의되며, 이는 곧 교육이 사회제도의 한 부분으로 어떻게 작용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계된다.

영재교육에서도 국가가 일정부분 관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은 문화적 활동의 일부로서 자율적으로 행위를 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적 통제와 교육에서의 자율성의 논리는 항상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법과 관련한 권리성의 문제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되고 이론 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특수 아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 아동이라 할지라도 신체·정신적 장애를 지닌 특수 아동의 경우는 복지에 대한 권리로서 논의되고, 이들과 관련된 단행본 서적 등이 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수한 분야에서 탁월성을 보이는 영재와 같은 경우는 신체·정신적 장애를 지닌 아동들에 대한 연구보다 더욱더 희귀한 실정이다. 교육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영재와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영재에 대한 법적 측면의 논의를 한 논문이나 단행본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1990년대 들어서서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룬 논문과 서적이 출간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재와 관련된 법제의 정비와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영재교육에 대한 법제화와 연구 동향은 한 나라의 영재교육 정책에 따라 적극적이기도 하고, 소극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

대 접어들어 ‘영재교육진흥법’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마련되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법이 정비됨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조장적·촉진적일 수도 있으며, 규제적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개인의 성장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면, 획일적이고 규제적인 성격은 지양되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이 개인의 성장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면,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도 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은 교육법의 성격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교육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교육법은 공법이나 사법의 어느 한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니고, 지휘·복종의 성격보다는 지도·육성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또한 교육목적과 교육과정, 교과서 등의 교육내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하고, 행정조직과 작용, 행정기관의 기능, 교육관련 주체의 역할 등의 교육외적 사항은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방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법의 특수성은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논의하는데 적용되며, 이에 따라 단순히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해석학적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 교육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여 해당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영재에 대한 법적인 체계와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여 영재교육 법제에 대한 검토를 개괄적 성격에서 시도한 것이다.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의 체계와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를 행하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헌법 규정에 제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과 관련해 이에 대한 권리성을 살펴보고 난 후, ‘영재교육진흥법’의 체제, 명칭 및 목적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교육의 세 주체로 불리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교육내용적 측면에 한정하여 교육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래서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

한 기초로 삼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II. 영재교육 관련법의 체계

‘영재교육진흥법’의 직접적 근거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제19조에 두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당사자로서 학습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 및 지원 체제,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 제고와 교권 존중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1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9조에서는 각 부문별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개인적 측면의 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볼 때, ‘영재교육진흥법’은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님으로써 교육기본권을 구현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교육의 투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에 보다 많은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음으로 인해 교육에서 복지적 측면 역시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교육관계법의 기본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www.moleg.go.kr)이다. 여기서 헌법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과 관련된 직·간접 조항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헌법 전문,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2조의 학문의 자유 등이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육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은 ‘교육기

본법'에 직접적 규정을 두고, '헌법'에 제시된 교육조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헌법'의 교육조항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존재가 되고,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 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규범화한 것이다(권영성, 1998: 295). '헌법' 제31조에 제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조항이 된다.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은 사회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생활에 필요한 제 조건을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김철수, 1988: 460). '헌법' 제31조는 총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항이 기본조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 제도의 규정과 무상성,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제5항은 평생교육, 제6항은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공교육 제도의 성립과 더불어 교사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학부모, 교사, 국가 등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 관련 직·간접 조항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관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총3개장 2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의 직접적 근거 조항은 동법 제12조와 제19조를 들고 있지만, 헌법의 여타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2조의 교육이념, 제3조의 학습권, 제4조의 교육의 기회균등, 제5조의 교육의 자주성, 제6조의 교육의 중립성, 제7조의 의무교육 등은 '영재교육진흥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2장의 교육당사자에서는 학습자(제12조), 보호자(제13조), 교원(제14조),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교육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나 권한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들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에 관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체계화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제3장의 교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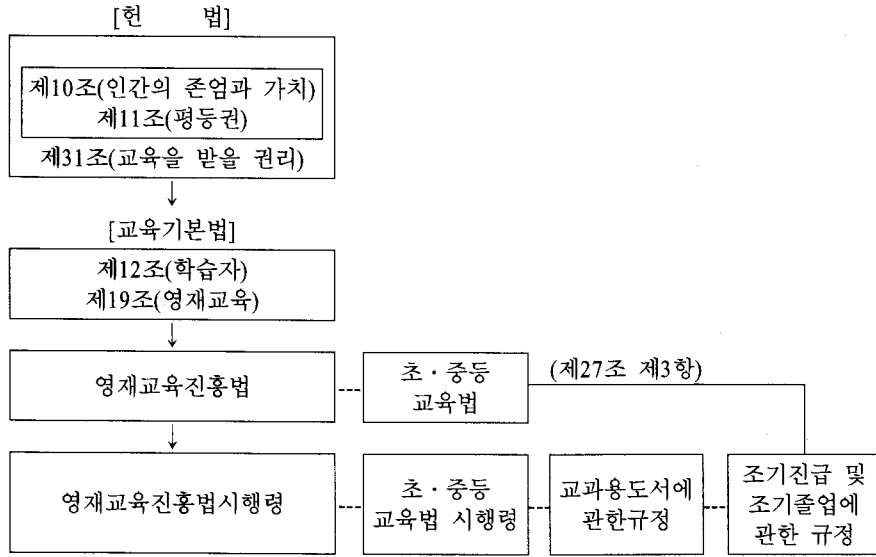
진흥에서는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제17조의 2), 특수교육(제18조), 영재교육(제19조), 유아교육(제20조), 직업교육(제21조), 과학·기술교육(제21조) 등과 같은 교육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위의 법률 체계를 지닌 것의 위치와 법적 효력 등에서는 다소 이견이 생길 소지를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기본법’의 제정은 1995년의 5.31 교육개혁안에서 논의되어 1997년에 입법예고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영재교육진흥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15호로 제정되었다. 그 뒤 2001년 1월 29일에 법률 제6400호, 2005년 12월 17일 법률 제7702호, 그리고 2008년 1월 28일 법률 제6215호로 부분적인 개정을 이루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영재교육진흥법’은 총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2002년 4월 18일 대통령령 제17578호로 제정되어 6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은 총6장 3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장은 총칙,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영재교육 기관의 운영과 특례자의 선정 등, 그리고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한편, ‘영재교육진흥법’은 일반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초·중등교육법’과의 관계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에 대해 예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3항에 근거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초·중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재능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1조). 총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영재교육진흥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 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새로운 연구과제가 된다. 여기서는 ‘영재교육진흥법’의 위치를 확인하는 입장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앞서 논의된 법적 규정을 단순화시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영재교육관련 법의 단계구조

III.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과 특징

본 장에서는 영재교육 관련법의 제정 경위를 고찰하면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고찰한다. 그리고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특징과 공과를 논의함으로써 주요 쟁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1. 법제화 과정과 입법 취지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의 시기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980년대 영재교육 실험과 과학 고등학교의 설립 시기, 1990년대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속진형 영재교육 시기, 2000년대 영재교육체제 구축 및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 추진시행이 그것이다(조석희, 2004: 4-7). 이들 시기 구분을 기준으로 삼을 때, 영재교육의 법제화와 관련된 시기는 두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기가 해당된다. 영재교육 관련법은 2000년 1월 28일 제정(시행 2002.3.1)된 ‘영재교육진흥법’과 2002년 4월 18일 제정·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있다. 그러나 이 법과 시행령이 마련되는 전초 단계는 1990년대가 접어들어서이다. 여기서는 영재교육의 시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지 않고, 법제화의 기초가 마련된 두 번째 시기와 법제화가 이루어진 세 번째 시기를 중심으로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고, 법제의 주요 내용을 개관한다.

첫째, 법제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제화의 마련은 1995년부터 시작된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교육개혁안은 교육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혁이었으며, ‘교육법’도 개혁 대상이 되었다. 1949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은 38차례 이상의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법 체계와 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강인수, 1996: 51). 이에 단일 법전으로 되어있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으로 구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당시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19조에는 영재교육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이 규정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 ‘영재교육진흥법’이다. 그러나 동 법은 행정부와 이해관계 당사자나 학계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정되기보다는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유영국, 2004: 52).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상희는 1990년대부터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영재교육진흥법’ 초안을 마련하고, 1994년 조석희에 의해 청와대에 보고되었으며, 이 보고서에 기초해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 1월 28일에 이상희가 대표 발의한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조석희, 2004: 11).

교육인적자원부는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동법 시행령의 마련에 착수하였다. 2000년 12월에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동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2001년 9월 12일에 영재관련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과 초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였다.

그 뒤 ‘영재교육진흥법’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까지 총 3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0호,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 7702호,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의 개정이 그것이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의 경우는 현재까지 2004년 12월 3일 대통령령 제18594호, 200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년 12월 21일 대통령령 제19754호, 1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년 10월 14일 대통령령 제20740호로 5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경과를 볼 때,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제화는 10년의 역사가 채 되지 않은 매우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둘째, ‘영재교육진흥법’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15호로 총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 이유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http://www.law.go.kr)이다.

영재교육의 대상자는 일반아동과 차이가 있지만, 교육의 목적에서는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영재교육의 대상자는 단순히 탁월성을 지닌 자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영재교육은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내용을 제공하여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각 개인의 인간적인 성장이나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에서 수월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

다음으로 제정의 주요 골자에서는 영재교육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부과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공교육에서 영재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성을 부과하고 있다. 사교육 체제와 달리 공교육에서는 한 개인이나 교사의 힘만으로는 교육을 행하기는 어렵다. 영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인 지원을 행함으로써 개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한 교육과정을 정규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영재에 대한 특별한 교육체제와 내용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는 이에 대한 학력을 인정함으로써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기본 골격이 형성되고 난 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3차례에 걸친 수정을 하였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면,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의 강화와 영재아동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영재아동의 발굴과 지원 및 관리 활용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의도가 내재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성립된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2년 4월 18일 대통령령 제17578호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은 총6장 3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진흥법’(2000. 1. 28, 법률 제6215호)이 제정됨에 따라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영재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http://www.law.go.kr)이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제정의 이유가 있다. 법 시행령의 주요골자는 크게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지역의 역할, 학교의 역할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역이나 교육현장에 대한 자율성이 강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서는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심의를 위주로 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영재 대상자 선발에 대한 결정권,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 등의 실시 등과 관련된 사항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영재교육 대상자의 추천, 교육내용과 수업의 자율적 운영, 수업일수와 학급편성 등에서 자율성을 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교원 자격을 개방하여 영재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탄력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다. 일반교육 대상자에 비해 단위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는 기본 계획의 수립이나 영재교육기관의 판단 등 주로 기준 설정과 외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교육의 역할 분담 구조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비교해 국가적 통제보다는 단위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법’에 제시된 내용과의 관계에서 예외성을 인정하는 편이다. 법 시행령은 현재까지 총 5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된다. 개정의 흐름은 영재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외계층 등에 대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확대,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원 자격의 개방성 확대 등 영재교육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데 두고 있다.

이처럼 200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영재교육에 대한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영재교육은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고, 실효성 있는 교육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개인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에 대한 부문별 능력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동시에 하게 됨으로써 영재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조치가 행해진 것이다.

2. 법제화의 특징과 공과

여기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의 주요 특징과 공과를 논의한다. 우선 법제화의 특징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목적이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영재교육은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서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되므로 투자적 동기가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과의 관계에서 예외 규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용 등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있는 편이다. 셋째, ‘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분명치 아니한 특수법적 성격을 갖는다(김낙운, 1986: 5). ‘영재교육진흥법’은 교육에 특유한 법 논리가 적용되는 동시에 교육법에 대한 예외성이 인정되는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넷째, 법이 국가나 정부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거나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재교육진흥법’의 공과는 다음과 같다. 공헌점을 보면, 첫째, 영재아동

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역사가 10년이 채 되지 않지만, 현대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법제화를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영재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아직까지 교육법에 대한 수준이 높은 일본과 같은 경우도 영재교육에 대한 법제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1995: 105). 법제화 여부가 해당분야의 교육을 촉진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뒷받침은 교육관련 주체의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둘째, 영재아동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이 부여되었다. 영재아동에 대한 권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부과함으로써 한 개인이나 교사, 학부모 등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헌법에 제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영재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에서 소외아닌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셋째, 법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을 고양시켰다. 비록 아직까지 구체적인 주제에 한정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제대로 구축되거나 이에 대한 쟁점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영재아동의 권리가 무엇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에 대한 권리의식을 고양시켰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보완을 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게 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한계 역시 노출되고 있다. 첫째, 영재에 대한 권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규정된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의무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중요한 학습자의 권리이자 교육관계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헌법에 제시된 사항과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사항과 관련해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과의 관계의 정합성과 정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개정의 주 대상은 처음 제정된 사항 내에서 미비점을 보

완하기 위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의 전반적인 체제와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헌법’의 정신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비추어 부정합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을 찾아내어 개선책을 도모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외국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영재교육의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영재에 대한 고려가 일찍 시작된 미국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접어들어 법률적 이슈 네트워크가 개발되고,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권고사항이 정리되었다(이경화, 최병연, 박숙희 역, 2005: 87).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늦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넷째, 교육의 본질에 의한 ‘영재교육진흥법’의 해석에 한계가 있다. 교육법을 전공하는 분야도 교육의 본질에 의한 법의 해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해석학에 치중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법사회학과 법철학적 입장이 도입되고 있다. 영재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법을 해석하는 시각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IV. 영재교육진흥법의 주요 쟁점

본 장에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법적 쟁점으로서 ‘영재교육진흥법’의 전반적 체제와 법적 명칭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에 관한 3주체로서 영재교육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영재교육진흥법’의 체제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의 경우는 장, 절의 구분 없이 총1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은 총6개장 3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6개장은 총칙,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영재교육기관의 운영(5장), 특별자의 선정 등(5장의 2), 보칙으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부칙이 제시되어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은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 ‘영재교육진흥법시행

령'의 경우는 총칙규정, 본칙규정, 부칙규정의 일반적 경우를 따르고 있다.

법령의 규정 수가 많을 경우 법령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영재교육진흥법'의 경우는 총 18개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의 경우는 '영재교육진흥법'의 내용을 장, 절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법과 시행령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따라서 '영재교육진흥법'의 경우도 내용을 구분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전반적 체계는 "처음에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본칙 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 규정을 둔다"(법제처, 2006: 42). 이러한 규정 방식에 의할 때, '영재교육진흥법'의 경우도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이해의 편의를 돕는데 유용하다.

'교육기본법' 제3장의 '교육의 진흥'에서는 제18조에 특수교육, 제19조에 영재교육, 제20조에 유아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 조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교육 분야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법률과 시행령을 보면, 장으로 구분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해가 용이하게 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0조에 근거를 둔 '유아교육법'의 경우는 총칙, 유치원의 설립 등, 교직원, 비용, 보칙 및 벌칙의 5개장 총3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을 두고 있다. 동법 시행령의 경우도 총칙,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교직원, 보칙의 5개장 총3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을 두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경우 역시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보칙 및 벌칙의 6개장 총38개조로 구성하고 있으며, 부칙을 두고 있다. 동법 시행령의 경우 역시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보칙의 6개장 총 33개조를 두고 있으며, 부칙을 두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 동일한 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재교육

의 경우 역시 ‘영재교육진흥법’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의 법 체계를 통일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과 시행령의 일관성을 기하여야 한다. 법의 제정에서 해당 법의 입법취지, 내용이나 조문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지라도 법과 시행령의 구조가 일관성을 결여하였을 경우 의미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2. ‘영재교육진흥법’의 명칭과 목적

여기서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법의 명칭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첫째, 법의 명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의 명칭은 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을 대표하는 것이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의 구체적 내용은 영재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기구의 설립과 기능적인 측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재교육에 대한 법제화의 초창기의 성격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진흥을 위한 제반 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과 관련된 절차나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유아교육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진흥보다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절차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변경될 당시, 전국장애인 교육연대를 비롯한 관련 단체나 관련 인사들은 ‘진흥’을 일종의 ‘시혜’(施惠)로 간주하여 이를 전적으로 거부하였다(김원경, 한현민, 2007: 116).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규정의 내용을 향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제명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3장(교육의 진흥)에서 각각 규정을 둔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등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분야는 ‘진흥’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영재교육의 경우는 ‘교육기본법’ 제19조에 제시되어 있다. 타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영재아동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사항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을 내용을 제시하여 ‘영재교육법’과 같이 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둘째,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에 제시된 법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는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거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과 관련해서는 ‘영재교육진흥법’의 근거 조항과 영재교육에 대한 목적을 규정한 문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영재교육진흥법’의 근거 조항으로서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제19조에 대한 사항이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당사자로서 ‘학습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영재교육에 해당되는 직접적 근거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교육당사자에 대한 사항은 유아, 일반아동, 장애인 등의 특수아동 등에 걸쳐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를 영재교육의 직접적 근거 조항으로 드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이 조항은 학생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내용도 있지만,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무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도 이 조항을 직접적 근거 조항으로 드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교육기본법’ 제19조는 영재교육에 대한 직접 조항으로서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제1조에 제시된 영재교육의 근거 조항으로서 ‘교육기본법’ 제12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영재와 영재교육 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영재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제1조에는 굳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등과 같이 동일한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제2조에 정의를 하고 있다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라는 용어는 “영재의 발굴”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은 “영재교육”으로 간결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에 대한 목적을 규정한 조항을 예시적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재의 발굴 및 영재교육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영재의 유형과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아실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으로 되어야 한다. 특히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 단순히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실현과 더불어 사회적 환원을 통해 다수인에게 혜택을 주는 의미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이나 기여 등에 대한 사항은 보다 적극적인 교육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영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 현행법의 규정에서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되어 있다. 외형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며, 재능이 발휘되지 않았지만 잠재성을 지닌 사람의 경우도 동시에 존재한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한다는 취지로만 이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과 더불어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도 동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영재의 권리와 의무관계의 정립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영재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된 사항에 많은 비중이 있다. 교육을 받을 대상인 영재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에 대한 직접 조항인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과 더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 예시로서 의무교육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논의한다.

의무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헌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영재로 판별된 경우 의무교육의 적용성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

항이 논의되고 규정될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성이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서는 만 6세를 기준으로 1년 내외의 조기진급이나 졸업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영재와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서는 일정한 연한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수주의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만을 가지고 영재교육 대상자에 대한 권리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경우는 제3조에서 의무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동법 제3조 제2항에서는 “... 출석 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 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일정한 연한을 재학하여야 의무교육이 완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법’에 제시된 의무교육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둬으로써 이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재교육진흥법’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사항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1994년도 헌법재판소의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서 만 4세 9개월 된 어린이가 언어교육, 표현력 등 모든 능력에서 초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학을 하지 못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일반학교에서 월반제도 등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특별한 재능을 지닌 영재의 경우 이와 같은 의무교육 제도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법적인 대상으로 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영아나 유치원 등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영재라고 판별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이러한 사항은 조기입학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안이 된다. 미국의 경우 어떤 주에서는 영재를 위한 예외를 문서

화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연령에 도달하여야 입학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법적 판단이 중요하게 된다. *Doc v. Petal Municipal School District*(1984)의 경우 지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된 시점에서 법원은 “아동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여 입학이 허가되었다(F. A. Karnes and R. G. Marquardt, 1997: 171-172)

또한 채택학습과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재능을 지닌 영재아동의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와 학부모, 국가 등에 대한 책무성을 동시에 법적인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1조의 3에 해당되는 영재학교의 학사운영에서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거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과 휴업일 등에 대한 사항에서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예외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의무교육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된 사항이므로 의무교육에 대한 사항 역시 ‘영재교육진흥법’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제시하되, 총칙과 본칙, 그리고 부칙 등으로 새로이 재구조화하여, 총칙 부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영재의 선발 기준과 범위

영재교육 대상자는 영재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이 누구인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에서는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 규정의 논리와 기준, 영재교육 대상자의 범위가 해당된다. 첫째, 법 규정의 논리와 기준은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당해 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로 되어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영재에 대해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등의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영재’로 표현함이 보다 적절하다. 그래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한다”와 같은 문구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재로 선발되는 자의 기준은 일반지능, 특수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 등의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재의 특성에서는 이들 외에도 높은 수준의 지도성을 지니고 있다(구자역 외, 2003: 24). 미국의 “Jacob K.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dent Education Act of 1988”의 Sec. 4103의 영재아동 정의에서 지도성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F. A. Karnes and R. G. Marquarot, 1991: 170). 이와 같은 사항이 보다 추가적으로 보완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수학문의 경우에는 ‘능력’이라는 개념보다는 ‘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일반지능, 특수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등은 주로 심리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동법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에서 이미 사회·경제적 이유인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 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저소득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하여 ...” 등으로 변경하여야 문장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된다.

둘째,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과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일반지능, 특정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등에 대해서는 주로 표준화 검사와 관련된 사항에 초점을 두고, 기타 면접이나 관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2호에서는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등을 지닌 경우 실기검사와 더불어 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선정 기준은 주로 각종 표준화 검사로 선발하는 것이 위주로 되고, 기타 면접이나 관찰이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준화된 검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선발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등에서 선정심사위원회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으므로 추천 등을 통한 다차원적인 선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영재의 선발 범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인간의 능력은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뒤 늦게 발휘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 내에서도 각 교과 영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영재 선발의 범위를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나, 영재 선발의 기준에 대해 진·출입이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5.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영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제기된다. 여기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예외성, 적절한 프로그램의 구축 필요성, 국가의 책무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예외성에 관한 것이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제시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영역이나 목적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교육내용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4조에서는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교의 장이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영재의 수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기진급, 조기졸업, 속진과 월반제도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단위학교에 이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영재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사항에서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일반 정규 교육기관에서 선발된 영재의 경우, 선발되는 시점이 다르며, 선발된 자들의 연령 분포도 다르며, 선발자의 능력 또한 개인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에서 통일적인 표준을 정하여 영재를 교육하는 것 보다는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

나 동일한 분야의 영재라 하더라도 앞서 제시한 사항에서 차이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인문학 분야의 영재, 과학 분야의 영재, 예·체능 계열의 영재라는 넓은 범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함과 동시에 공통적으로 부과하여야 할 핵심적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차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위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쉽지 않은 사항이 된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제시한 ‘안’의 일부에서 영재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을 정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조석희, 2004: 45)라는 제안은 이러한 의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이다. 상이한 연령대의 아동들과 상이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놓인 영재들이 하나의 반에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들에 정서적 통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어떻게 지원하여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재 교육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성, 그리고 영재 교육프로그램에 부적절한 아동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들이 일반학교로의 이동의 유연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성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 적절한 교육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관련이 된다. 지역별, 학교별로 영재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를 경우 이는 또 다른 기회의 균등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영재로 판별되어 영재교육기관에 입학해 학업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문의 영재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이 정규 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어떻게 열어주고, 학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들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 측면에서는 영재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oadly v. Board of Education(1994)에서 Neil Broadly의 부모는 Broadly에게 개별화된 영재교육 수업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영재를 다루는 코네티컷 주의 법은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그와 같은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별화 수업을 받지 못하였다(Frances A. Karanes & Ronald G. Marquardt, 2003: 593-594). 이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구체적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영재교육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교육과정 모형과 사례를 법적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좋다.

셋째, 교육과정에 대한 책무성에 대한 사항이다. 영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전담팀의 운영과 책무성에 대한 사항 역시 규정성이 필요하다. 또한 영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제반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재 교육과정이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만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국의 *Bernett v. New Rochelle School District*(1985) 소송에서 New Rochelle은 새로이 설립된 영재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109명의 영재를 선발하였으나, 37명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밖에 없어 제비뽑기를 하여 학생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탈락한 영재아동 *Bernett*의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영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일반 아동에 비해 보다 많은 예산과 자원의 배분이 요구된다면, 이에 대한 책무성의 구조가 반드시 뒤따르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6. 직전 교사교육과 현직 교사교육

영재교육 담당교사와 관련해서는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으로 구분해서 논의한다. 첫째, 직전 교육에 관한 것이다. 교원은 해당 학습자를 가장 가까이

서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소질과 적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판단과 이에 적절한 교육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문성의 기초위에 자울성 역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전 교사교육에서부터 영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 직전 교육에서 교원자격은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등에 제시되어 있다. 과거에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이론을 가르치거나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1월 8일자로 고시된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교직과목의 세부이수기준을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의 3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교직소양은 필수과목이며,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직실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특수아동의 이해’에는 영재교육 영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직전 교사교육에서도 영재교육의 이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일부로 한정된 측면으로 영재교육이 취급될 경우, 이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다. 교사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성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직 교육에 관한 것이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에서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7조에서는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제28조에서는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겸임 근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 기관별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 기준 역시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제25조에 규정된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은 다양하다. 영재학급 교사는 우선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다음으로 교원자격이 없어도 영재학교에 임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소

지자로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교원 자격이 없어도 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제26조에 제시된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경우 역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와 석사학위를 가진 경우 등 교원 자격증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다. 제27조 역시 제26조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을 볼 때, 현행법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자격증을 소유하고서, 엄격한 연수 과정을 거친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학위나 해당 분야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 해당 분야의 경험과 자격증에서 어느 것이 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의 교원의 이동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강점을 지니지만,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과정과의 관계에서는 보다 전문화된 자격의 분화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Frances A. Karanes & Ronald G. Marquardt(2003: 598-599)의 경우 교원의 자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들 내용 중 일부를 보면, Johnson v. Cassell(1989)사건에서 Johnson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웨스트버지니아 영재교육법에 제시된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11년의 영재를 가르친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영재학교에 고용된 자가 무자격자이며, 훈련되지 않은 자이고, 영재경험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Dilly v. Slippery Rock Area School District(1993) 사건에서 Dilley는 Nachtman에 비해 영재교육에 7년 이상의 경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위한 컴퓨터 자격을 소유하지 못하였다. 전일제에서 한나절 근무로 그 입지가 축소되었다. 그래서 소송을 한 결과 Dilley가 많은 경험을 지녔지만, 자격을 소유한 Nachtman의 교사로서의 입장이 유지되었다.

비록 우리나라와 법률 체계가 다르고, 주 법에 규정된 사항이 다르다 하더라도,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 일정한 경험과 자격증을 모두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험을 중시하여 인정하는 경

우와 자격을 중시하고 일정 시간 연수를 받았을 경우, 이를 영재를 담당하는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영재교육에 대한 역사가 일정한 관계로 이에 대한 내용과 쟁점이 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경우는 비록 그 기관이 어떠한 형태를 지녔는지도 중요하지만, 영재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학문 분야나 영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영재를 담당하는 교사의 권한이나 자유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논의는 권리성의 확보를 위한 기초적 연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진흥법’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법 체계와 목적, 교육의 3주체로서 학생, 교육과정, 교사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가 넓고, 법적 체제와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한 경우까지 있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정교하게 논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영재교육의 본질에 입각해 ‘헌법’의 교육관계 조항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주제별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에 해당된다.

교육의 연구 대상은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구성되며, 제도권 내의 교육은 법을 매개로 하여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 영재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에 대한 이들 책무성을 부과하는 데는 단순히 ‘영재교육진흥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본법’이나 ‘헌법’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연구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법 자체의 규정이나 문구 등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이들 내용은 법적으로는 법 해석학적 입장에서 전개되고, 법 사회학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법학 분야의 역사가 짧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교육입법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영재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제화를 구축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과 이에 기초한 비교를 통한 보다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행 법제의 구조와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재판에 해당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판례에 대한 연구는 영재교육 관련 법적 과제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법이란 현실에 바탕을 두는 인간의 법규범이고, 살아있는 법의 표현이 판례이기 때문”(정재황, 1994: 머리말)이다. 영재교육 관련 판례의 정리와 구축은 미국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축적된 연구 성과는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영재교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발굴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영재교육 정책에 대한 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영재교육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 된다. 법률적으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법적인 대상으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과 정책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정당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연구를 위해서도 법적 측면의 규정성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넷째, 영재교육의 본질에 의한 법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체제가 정립되어야 한다. 법에 규정된 사항은 일차적으로 법해석학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법해석학은 법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행하는 것으로, 교육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학적 시각과는 달리 교육적 시각에서 이를 정립하여 교육의 논

리와 토대의 구축에 의해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인수 (1996).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정방안. 대한교육법학회 1996년도 연차학술대회. 서울: 대한교육법학회. 49-75.
- 구자역, 김홍원, 박성익, 안미숙, 이순주, 조석희 (2003). 동서양 주요국가들의 영재교육. 서울: 문음사.
- 권영성 (1998).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 김낙운 (1986). 현행교육법해설. 서울: 하서출판사.
- 김원경, 한현민 (2007). 2007 특수교육법의 쟁점과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15-104.
- 김철수 (1988). 헌법학 개론. 서울: 박영사.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09.6.30).
- 법제처 (2006). 법령입안 심사기준. 서울: 법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1995). 세계의 영재교육 I. 서울: 배영사.
- 유영국 (2004). 영재교육진흥법률(안)에 대한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진흥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재황 (1994). 판례헌법. 서울: 길안사.
- 조석희 (2004). 영재교육백서 200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00).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방안-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안) 제정에 관하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헌법재판소 (1994.2.24).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 93헌마192 전원재판부. 서울: 헌법재판소.
- Davis G. A and Rimm S. B. (2005). 영재교육[이경화, 최병연, 박숙희 역] 서울: 박학사. (원본출간년도: 2004).
- Karnes F. A and Marquardt R. G. (1991). *Gifted children and the law*. Ohio: Ohio Psychology Press.
- Karnes F. A and Marquardt R. G. (1997). The fragmented framework of legal protection for the gifted.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72(3&4), 166-179.

= Abstract =

Legal Issues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Changun Park

Pusan National University

Ho Seong Choe

Kyungnam University

Hae-Ae Seo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issues related with th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in legal aspects. To accomplish this goal, the legal system connected with th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is examined. It include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ramework act on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tc.. Second, the institutional proces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and legal characteristics is reviewed. It is found tha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and its regulations is designated to achieve goals of education in general.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children with gifted and talented seem to attain more investment than general education institutions. Third, main issues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is discussed. They are the legal system, legal name and aim, rights and obligation for gifted and talented, selection of gifted and talented,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urriculum, and teacher education. In conclusion, it needs deeper study on each issue and needs to be presented the specific alternatives. So, it should be improved the law in

such a way to mee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the gifted and talented.

Key Words: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gifted education, Selection of gifted, Curriculum, Teacher certification

1차 원고접수: 2009년 7월 22일
수정 원고접수: 2009년 8월 17일
최종 게재결정: 2009년 8월 25일